

대구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단1398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경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경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9. 11. 1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서 C와 피고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C와 자매 사이인 자로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7. 7. 27. 주식회사 E으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90740호로 C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1,639,169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1. 22. C에게 송달되어 2018. 12. 7.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10. 26. 주식회사 F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G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73721호로 C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9. 14.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774,836원 및 그 중 1,303,120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0. 19. C에게 송달되어 2018. 11. 3.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8. 11. 30. H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70507호로 C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9.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7,604,212원 및 그 중 4,646,463원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8. 1. C에게 송달되어 2019. 8. 17.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D은 2017. 8. 2.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I, 자녀들인 C 및 피고가 있었는데, I, C 및 피고는 2019. 11. 13.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15. 접수 제1240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의 무자력 등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지분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 합계 27,952,000원이 있어, 총 재산으로 총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순번	채권자	금액(단위: 원)
1	J	1,934,000
2	K	1,673,000
3	L	3,949,000
4	M	5,786,000
5	N	1,150,000
6	O	2,874,000
7	서민금융진흥원	10,586,000
합 계		27,952,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P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채권은 C와 주식회사 E, H, 주식회사 F와 사이의 대여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C의 채권자로서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그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문제일 뿐 법률행위의 성립시점 자체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C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상속포기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포기는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 즉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임에 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재산에 대한 일종의 계약인 불요식행위로서 그 방식 및 목적, 내용, 요건, 효과, 법적성질이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어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같다는 점만으로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포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내용, 체결 경위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단순히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협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이것이 C가 다른 상속인들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내린 인적 결단으로써의 상속포기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C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I의 소유로서 배우자인 D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인데 D가 사망한 후 I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아파트는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반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을 제1, 4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런 사정만으로 I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것으로서 이를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람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아파트 S동

[도로명주소] 대구 달서구 T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794.90㎡, 2층 내지 15층 각 772.77㎡, 지층 지하주차장 3854.4㎡

지층 독서실, 전기실 552㎡

1층 노인정, 전기실, 화장실 229.8㎡

2층관리실 186.32㎡, 3층 집회실 186.3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구 달서구 Q 대 1991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1층 U호 철근콘크리트조 84.9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9918.2분의 42.09 끝.

